

# 92年度郡費支援事業調査結果報告書

郡費支援事業調査特別委員會

## 92年度郡費支援事業調査結果

### 1. 調査の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양주군에서 군비(국·도비사업등포함)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 또는 투자되었는지 조사를 통하여 그 운영 실태와 효과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고 나아가서 군정의 발전은 물론 군민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시책을 촉구하는데 있음.

### 2. 調査期間

1992년 7월 14일~16일(3日間)

### 3. 調査實施機關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본청의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및 농촌지도소

### 4. 調査實施經過

#### 가. 調査班

위 원 장	간 사	위 원	보 조공무원
위 원 장	김 재 현	우 충 국	전문위원 홍영섭
직 무 대 행		한 상 익	
김 재 현		이 은 선	
		정 명 훈	

나. 調査日程

월 일	대상기관	장 소	조 사 방 법
92. 7.14 ~7. 16	양 주 군 (새마을과)	○의회 본회의장 ○현지	○현황보고 및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 ○현지 확인 ○기타
	양 주 군 (산업과)	( " )	( " )
	양 주 군 (건설과)	( " )	( " )
	양 주 군 (도시과)	( " )	( " )
	양 주 군 (농촌지도소)	( " )	( " )

7 (第10回-郡調特第2次)

5. 主要調査實施內容

가. 調査對象事業

사업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회천읍 옥정2리	○영지버섯 260평 ○참여농가 3농가	○17,050 천원 ┌ 용자 13,000 └ 자담 4,050
	주내면 유양1리	○비육우 16두 ○참여농가 4농가	○24,000 천원 ┌ 용자 20,000 └ 자담 4,000
	남면 경신리	○사슴 25두 ○참여농가 5농가	○32,000 천원 ┌ 용자 25,000 └ 자담 7,000
	남면 구암리	○표고버섯 50평 ○참여농가 1농가	○6,000 천원 ┌ 용자 5,000 └ 자담 1,000
	광적면 덕도1리	○표고버섯 300평 ○참여농가 2농가	○20,000천원 ┌ 용자 10,000 └ 자담 10,000
기계화영농단 운영사업		○대규모 17개소 ○소규모 47개소	○346,805천원
기계화사업		○대규모 8개소 ○소규모 9개소	○180,370천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위탁영농회사 운영사업	남면 구암리	○트랙터 3대 ○콤바인 1대 ○이앙기 1대 ○육묘상자 2,000개 ○건조기 1대	○41,220천원
정 주 권 영농시설사업	은현면 하패리	○비닐하우스 166동 ○ 면적 16,600평 ○참여농가 65농가	○221,327천원
덕정-옥정간도로 확·포장공사	회천읍 덕정리 -주내면 고읍리	○연장 5km ○폭 8km ○포장폭 6m	○2,653,000천원
광·백석상수도 시설공사	백석면 방성리	○취수댐 ○취수탑 ○여수토, 방수로 ○도수 및 송수시설 ○정수시설	○4,585,400천원
토종닭방사시범 사업	광적면 효촌2리	○ 토종닭 5,000수 ○육추사1동 50평 ○참여농가 1농가	○2,000천원 ┌ 보조 1,000 └ 자담 1,000
	장흥면 부곡리	○토종닭 5,000수 ○육추사1동 50평 ○참여농가 1농가	○2,000천원 ┌ 보조 1,000 └ 자담 1,000

9 (第10回-郡調特第2次)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새로운작목개발 시범재배사업 (화훼시설)	백석면 가업2리	○벤자미나고무나무 800주 ○면적 200평 ○참여농가 1농가	○3,935천원 ┌ 보조 3,200 └ 자담 735
	장흥면 삼상1리	○쉐플레라 1,500주 ○면적 200평 ○참여농가 1농가	○3,673천원 ┌ 보조 3,200 └ 자담 473
시설을이용한 채소류주년생산	은현면 하패1리	○오이 1,600주 ○면적 200평 ○참여농가 1농가	○3,457천원 ┌ 보조 2,400 └ 자담 1,057
	백석면 복지1리	○상추 200평 ○참여농가 1농가	○3,457천원 ┌ 보조 2,400 └ 자담 1,057
새로운버섯재배 협업경영  543	광적면 가남3리	○버섯 ○재배사 2동 110평 ○재배상 4동 97평 ○참여농가 3농가	○88,315천원 ┌ 보조 15,200 ├ 융자 40,000 └ 자담 33,115

나. 調査內容

(1) 새마을과

- 양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된 융자금 사업이 회천읍 옥정2리 황명성의 51명에게 2억 2,100만원으로 가구당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융자한 부분에 대하여 그 중 인력과 시간 여건을 감안하고 조사의 신속을 위해 5개 지역 1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회천읍 옥정2리 황명성, 지은옥, 황규명등 3농가에 1,300만원을 융자하였으나 기위 영지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융자한 사실과 사후 관리 소홀로 실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지버섯이 사양길에 있어 판로가 어려워 문제점으로 지적됨으로써 소득 향상 목적과는 상이하며 광적면 덕도1리 정동권 오동환에 1,000만원을 융자하였으나 위 경우와 같으며 특히 오동환의 경우는 일부 수확을 보았으나 정동권의 경우는 완전 실패이고 표고버섯 재배자금을 가지고 영지를 재배, 당초 융자 목적과 상이함.
- 양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소득 향상에 목적이 있는 바 현지 조사 결과 대부분 부농이며 빈·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소유토지가 4,000평 내지 7,000평의 농지 소유자에게 소득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의 조건이 좋은 자금을 융자하였음.
- 융자금액에 대하여도 양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 4조(융자한도액 및 이율)에서는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 같은 조례 제15조 지방 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  
 용자 특례는 가구당 100만원, 같은 조례 제16조 우수농고 영농  
 정착 학생에게도 100만원, 같은 조례 제17조 화훼기술 육성 농  
 고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을 뿐 소득이 적은 마을의 가구당  
 용자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도의 지침에 의거 가구  
 당 500만원씩 용자한 사실.

- 주내면 유양1리 박철규, 박건호, 박장태, 최현철에 2,000만원을  
 91. 6. 22 용자, 16두의 소를 구입 비육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확인시에는 1두도 없는 실정이고 당초 구입 12두도 자부담을  
 투자한 근거가 없으며 계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남면  
 경신리 김영일의 4인의 경우 2,500만원을 용자, 사슴을 공동구  
 입 사육하고 있고 현지 조사중 잘 된 사항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부담 700만원은 사육시설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근거가 불확실함.
- 남면 구암리 운동열의 표고버섯 재배 또한 위에서 조사된 내용  
 과 같으며 자부담 100만원 투자는 전혀 된 바 없고 용자된  
 금액 500만원도 사업 물량으로 보아 전액 투자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후 관리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 본 조사를 통해 조례의 목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부락 공동  
 사업은 극소수일 뿐 아니라 용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같은 여  
 건의 농민 대부분이 희망할 때 선정 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업  
 계획의 충분한 검토로 선정 사업의 성공 여부와 전망등을 판단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민 불만 초래.

- 융자금이 3년거치 2년 무이자 균등상환의 조건인 데 반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에 끝남으로써 융자 목적과 상이함.

(2) 산업과

- 기계화 영농단 64개소(대규모 17개소, 소규모 47개소)
- 기계화 사업 17개소(대규모 8개소, 소규모 9개소)

- 소규모와 대규모는 공히 5~10명으로 구성, 국·도·군비의 보조와 자부담을 하여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나 대부분 1~2명의 개인이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현지 확인 과정에서 노출됨.
- 고가품의 농기계를 노천에 방치함으로써 사후 관리 잘못으로 기계의 노후는 물론 수리비의 과다 지출이 예상되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문제점을 보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기계 사용료가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음.
- 남면 구암리 조완제 위탁 영농회사에 대하여는 소규모, 대규모 기계화 영농자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과 영농회사 설립시 지원받는 기계화 자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개인이 기위 구입 보유한 농기계가 있어도 같은 기종을 재차 구입해야 되는 모순이 있음.

- 은현면 하패리(선업마을) 유용화의 64동 비닐 하우스 재배에 대하여는 인력 부족과 사후 관리 지도 미흡으로 실패한 경우와 당초 목적이 미달되고 있으며 은현면 유용화의 경우는 농촌지도소에서 2동분 240만원을 보조 받고 92년 산업과에서 7동분 933만원의 보조를 받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낙원, 홍순웅, 이종권 3인에게 1동씩 나누어 준 사항에 대하여는 이종지원은 물론 인력 부족, 재배 능력 결여등 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

(3) 건설과

- 덕정-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도·군비 총 25억 6,300만원을 투자, 91년 3월 착공하여 92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지역 균형 개발과 농산물 수송의 역할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공사로서 기위 완료된 부분에 있어 진입 하수구 설치 부분에 흠관 매설이 없고 하수구의 진입로 연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잘 못 되어 우수가 역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옹벽 설치 부분은 본 도로에서 지선 진입 부분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 미관이 좋지 않을 뿐더러 토사 유출의 우려가 있음.
- 사업 진도 또한 공사 주관 부서에서는 89.5%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현장 확인시 공사 전체 공정은 68%, 92년도 연간 공정은 75%로 확인됨으로써 과장되게 보고한 사실이 도출됨.

(4) 도시과

- 광·백석 상수도 사업은 당초 계획이 91년말 완공하여 통수키로 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93년도에 가서나 급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지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와 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광·백석 상수도 사업장 위치 선정에 있어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치 않아 총 저수량 124만톤 확보가 갈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홍수 만수시 용량, 유속시간등을 잘 못 계산하고 설계의 잘 못으로 여수로, 방수로가 높고 좁게 설계되어 91. 7. 25 220mm정도의 강우량에 용벽이 붕괴되었을 뿐 아니라 댐의 제일 중요한 그라우팅이 빠져 있고, 댐 중심 점토는 논흙을 사용하는 등 차수벽 공사가 잘 못 되었음이 도출되었음.
-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에서는 공사도중 설계 변경 요인이 상당부분 발견되어 있었던 데도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 변경건의를 하였고, 또한 사전 충분한 시공방법, 시공범위, 주입공의 배치, 수량과 심도 등 물량을 검토하지 않았음.
- 입찰 방법에 있어 제한경쟁 입찰을 함으로 해서 중요한 댐 공사에 대한 기술축적이 적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됨으로써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고 댐 내측 사석 규격이 설계에 의한 규격품이 아니고 사석 처리가 미흡함.
- 추가 공사 건의 설계 내용에 모든 경비를 법적 최고액으로 계산을 하였고 설계 용역 발주 업체인 경기건설진흥공단이나 시공

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은 여수토와 방수로가 당초 3m에서 배 이상인 8m로 늘어난 것에 대하여 의문시되며 향후 폭우 또는 우기시에 많은 피해와 공기 지연에 대한 광·백석 수혜주민 1만5,600명으로부터 행정 불신의 비난이 예상되고 추가 소요 공사비 약 11억800만원의 재 투자로 인하여 역시 군민으로부터 강한 질책이 예견됨.

(5) 농촌지도소

- 광적면 효촌리 백대현, 장흥면 부곡리 지성운의 토종닭 방사 사업에 각각 100만원씩 보조하였으나 백대현의 경우는 현지 조사시 방사 닭이 전혀 없었으며 보조 사업의 목적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파급 효과는 물론 농민 소득에 기여코져 하는 보조금 지원의 기본 취지를 상실하고 있음.
- 백석면 가업2리 장순원, 장흥면 삼상1리 최인용에게 새로운 작목 개발 시험 재배 사업으로 3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많은 화훼 농가 중에서 2명에게 보조금은 지원을 받지 못한 화훼 농가들의 불만이 예상됨.
- 광적면 가남리 새로운 버섯 재배 협업 경영은 총 사업비 8,831만원 중 보조 1,520만원, 융자 4,000만원, 자부담 3,311만원을 투자, 홍청부, 윤용태, 김상진 3인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윤용태 혼자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확대되어 과잉 생산시 판로 문제가 지남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비 과다 소요로 일반 농가에 권장은 어려움이 있고 파급 효과가 작을 것으로 판단되며 버섯 요리 방법의 홍보가 미흡.

6. 是正및處理要求事項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제2항
-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제3항

가. 새마을과

- (1) 양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현지 조사 결과 빈·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지원 농가 대부분이 소유 토지가 4,000평 내지 7,000평으로 부농에 속하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이러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의 조건이 좋은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잘 못된 것으로 그 개선방법을 강구하여 시행.
- (2) 양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4조(융자한도액 및 이율)에는 융자 한도액이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 같은 조례 제15조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는 학교당 1,00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이 적은 마을의 가구당 융자 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도의 지침에 의거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한 것은 동조례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따라서 동조례중 제4조(융자한도액 및 이율)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정하여 시행.

- (3) 지원 농가중 대부분이 당초 계획된 자부담은 투자하지 않고 용자금만을 투자하여 사업 효과가 극히 불투명하며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전망, 지속성, 파급 효과등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고 사후 관리 지도의 소홀로 인해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의 불만이 있으므로 향후 시정.
- (4) 용자금이 3년거치 2년 무이자 균등상환의 조건인데 반하여 사업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에 끝남으로써 용자 목적에 상반되므로 장기적 사업으로 유도하여 지원 목적의 효과를 파급토록 조치.
- (5) 회천읍 옥정2리 영지버섯 지원은 공동 경영이 아닌 단독 재배였으며 또한 신규 사업자가 아닌 기존 재배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용자 목적에 위배되고 있으며 현재 영지버섯 재배가 사양길에 있어 앞으로의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 (6) 광적면 덕도1리 정동권의 표고버섯 재배는 완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기술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안된 것으로서 향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
- (7) 주내면 유양1리 비육우 사업은 축사를 신축한다는 구실로 소를 매매한 대금을 은행에 예금시킨 상태에 있고 당초 소 구입 두수가 12두인데도 군에서는 16두로 관리하고 있는 등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바 이의 시정 조치.

- (8) 남면 구암리 운동열의 표고버섯 재배 역시 본인의 말로 참나무 1개당 종균 접목 및 인건비 포함하여 2,000원씩 투자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융자금중 400만원 정도만 투자되는 등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추가 사업을 하도록 조치.

나. 산업과

- (1)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있어 대부분 1명의 대표가 개인 기계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
- (2) 기계화 영농단의 농기계 보관 창고가 빈약하여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신규 신청시 농기계 보관에 대한 대책을 사전 검토하여 시행.
- (3) 은현면 하패리(선업마을) 유용화의 비닐 하우스 사업 경우와 같이 재배 능력을 감안치 않은 이중지원으로 인력의 한계를 느껴 3인에게 1동씩 임의로 나누어 준 것은 사업 선정 및 사후 관리에 큰 문제점이며 이중지원 하계된 경위의 해명을 요구하며 향후 같은 사례 없도록 조치.

다. 건설과

- 덕정-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현지 도로 여건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 졌는지 재검토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 준공 전에 보완토록 함은 물론 흙관 매설이 누락된 부분과 하수구의 진입로 연결 부분의 우수시 역류 현상을 방지하고, 본 도로에서 지선 입구까지 옹벽이 연결되지 않아 미관 저해와 토사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 조치하고 완벽한 시공과 공기내 완공을 위하여 감독 철저.

라. 도시과

- (1) 광·백석 상수도 사업 저수지 위치상으로 보아 총 저수량 124만톤 담수가 갈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
- (2) 댐의 중요한 부분인 그라우팅이 누락되었고 댐 중심 점토를 논흙으로 사용하는 등 차수벽 공사가 잘 못 되었는바 이의 시정 방안 강구.
- (3)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에서는 여수토와 방수로가 당초 3m에서 추가 설계에서는 8m로 늘어난 것 등 설계 변경 요인이 처음부터 상당 부분 예견되었음에도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 변경 건의를 한 원인과 또한 사전 충분한 시공방법, 시공범위, 주입공의 배치, 수량과 심도 등의 검토가 미흡하였던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조치.
- (4) 댐 내측 사석 규격이 설계에 의한 규격품이 아닌 것으로 시공하였고 사석 처리가 미흡하며 전 공사에 걸쳐 조정 부분이 미흡하므로 이의 시정 조치
- (5) 추가 공사 건의 설계 내용에 모든 경비를 법적 최고 한도액으로 계산한 바 추가 발주 과정에서 재 검토.
- (6) 광·백석 상수도 사업은 당초 계획이 91년말 완공하여 통수기로 되었는데 93년도에 가서나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때 공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비난과 여수토 및 방수로 등 추가 공사비 약 11억 800만원의 재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급수 지역 마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지.

마. 농촌지도소

- (1) 토종닭 방사 및 화훼 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같은 여건의 농가가 많으므로 향후 파급 효과가 크고 신규 사업 농가에 지원함은 물론 소득과 연계하여 지속성이 있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할 것이며, 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탈락된 대상자의 불만 해소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사업 성과의 극대화 방안 강구.
- (2) 광적면 가남리 새로운 버섯 재배 협업 경영은 3인 공동 경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사실상 운용태 1인이 운영함으로써 협업 경영사업의 취지가 의미를 상실했는 바 이의 대책과 과잉생산시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
- (3) 순수 준비 보조 사업을 지양하고 양주군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을 특별회계로 전출, 자금을 확보하여 의욕이 있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자금을 융자하고 회수된 자금을 재 투자토록 시정.